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83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 박수민·김승수·이인선

김선교 • 이헌승 • 김소희

김상욱 · 서지영 · 강명구

한기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 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스타

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림.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꺾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 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 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유하게 되거나"를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거나"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②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3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			
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u>소유</u>	소유		
<u>하게 되거나</u> 다음 각 목의 어	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		
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	<u>원을 겸임하거나</u>		
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			
<u> </u>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3		

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 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투자조합

나. · 다.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

,
1. ~ 3. (현행과 같음)
4
가
100분의 50
나.・다. (현행과 같음)
5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 를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 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 한다)의 <u>100분의 20</u>을 초과 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6. (생략)

④·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100분의 30</u>
S. (현행과 같음)

6

④·⑤ (현행과 같음)